

역량성취도 평가체제 운영 규정

제정 2022.06.13.

개정 2023.09.25.

개정 2024.10.07.

개정 2025.03.1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의 질적 향상,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역량성취도 평가체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‘역량성취도’란 학생의 입학 이후부터 졸업까지 취득한 스쿨역량(직무능력)을 기준으로 해당 역량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을 표기한 자료로, 평가계획을 기간으로 별도의 산출식에 의해 산출한 결과를 의미한다.

제3조(평가체제) ① 역량성취도 평가체제는 각 호와 같다

역량성취도 평가체제		
1	평가계획	- 교육과정 개발/개편시 수립한 교수요목 기반으로 평가계획 수립
2	진단평가	- 필요시 개강 첫 주 학습자의 수업 전 상황 파악을 위해 학생 자체평가 실시
3	직무역량평가	-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최소 2회 이상의 평가 시행
4	평가결과 산출	- 학기말 출석점수, 직무역량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결과 산출
5	역량성취도 산출	- 학생의 평가결과 기반으로 역량성취도 산출 - 역량성취도 산출식 $\text{역량성취도(A) 산출식} = \frac{\sum \text{수강과목내 1개 역량의 취득점수}}{\sum \text{수강과목내 1개 역량의 배점(총점)}} \times 100$ - 학기별 역량성취도 산출식 $\text{학기별 역량성취도(B) 산출식} = \frac{\sum \text{역량별 성취도(A)}}{\text{역량 개수 N}}$
6	교육품질관리 환류	- 역량성취도 결과를 교육품질관리단계에서 환류하여 다음 학기 또는 차년도 교육과정 개발/개편에 반영

제4조(주관부서 및 위원회) ① 역량성취도 산출 업무의 교육혁신센터에서 주관한다.

② 업무에 관한 주요 심의 및 자문은 교육과정혁신위원회에서 주관한다.

제5조(세부사항) 이 규정과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정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- ③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- ④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0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